

프랑스의 근로자 복지제도

1997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 I. 導入
- II. 勞動市場 動向 및 家計支出
 - 1. 임금·노동비용의 추이와 구매력
 - 2. 소비행태
- III. 프랑스의 社會保護制度和 勤勞者福祉制度
 - 1.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
 - 2. 근로자복지제도

IV. 맺음말

부록 I : ILO의 임금과 노동비용에 대한 정의와 그 구성요소

부록 II : 한국과 프랑스의 임금과 노동비용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

參考文獻

表目次

- <표 1>프랑스 전가구의 사회급여 수혜 변화율
- <표 2>프랑스 저축률
- <표 3>프랑스의 전가구 소비지출 현황
- <표 4>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지출 비율
- <표 5>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
- <표 6>실업급여의 지급기간
- <표 7>연대제도 급여의 수혜자격과 지급기간
- <표 8>프랑스의 주택소유가구 비율
- <표 9>프랑스 사회·직업계층별 주거비의 부담상황
- <표 10>프랑스 세대구조별 주거비의 부담상황

그림 目次

- [그림 1] 한국·프랑스의 명목임금추이 비교
- [그림 2] 한국·프랑스의 물가지수추이 비교
- [그림 3] 한국·프랑스의 실질임금추이 비교
- [그림 4] 명목노동비용
- [그림 5] 실질노동비용
- [그림 6] 프랑스의 가계소비
- [그림 7] 프랑스 구매력 추이
- [그림 8] 프랑스와 한국의 주거비 및 교육비 지출비율
- [그림 9] 프랑스의 사회보호
- [그림 10] 한국의 사회보장
- [그림 1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조직표

I. 導入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간 임금 타협은 매년 대립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막대한 국민경제의 손실로 결과되고 있다. 여러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는 주택비, 교육비 등이 매년 큰 폭으로 올라 임금상승분을 잠식하므로, 이를 감안한 임금상승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비용이나 교육비용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보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서유럽 국가들은 주택이나 교육은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사회복지차원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즉 주택비용이나 교육비용의 보조는 노사간에 타결될 성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는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관심사인 근로자복지는 프랑스 사회복지제도 중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에서 일반제도가 자세히 설명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제Ⅱ장에서는 최근의 통계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프랑스 경제가 기록한 임금, 노동비용과 구매력의 변동추이, 근로자 가계수지에서 주택·교육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주거비 및 교육비용의 변동추이 등에 관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고 제Ⅲ장에서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근로자에 관련된 주택 및 자녀교육 지원제도와 보육보조제도 등 프랑스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프랑스의 임금-노동비용, 구매력 및 소비지출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문제점들과 사회복지제도, 특히 근로복지관련 제도들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勞動市場 動向 및 家計支出

높은 실업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 국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하겠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5년간 약 30%가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1995년 말부터 다소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미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하며 1994년에는 약 12.6%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¹⁾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다른 서유럽제국들과 유사한 다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 장기적 실업상태, 그리고 젊은 노동력에 집중된 높은 실업률 등인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프랑스 실업률의 약 8%포인트가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²⁾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문제란 적정선을 초과한 최소임금수준,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주들의 과도한 부담, 지나치게 관대한 장기실업수당 지급, 그리고 근로자들 능력과 작업과의 미스매칭 등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1995년 6월에 집권한 프랑스의 자크 시락 대통령의 경제각료들이 제시한 첫 번째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조'에 집중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고용증대를 위한 여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중소기업들의 노동비용을 정부의 보조를 통해 줄이고, 이를 통해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즉 프랑스는 현재 실업자의 구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근로자복지는 과거와 달리 개선보다는 현상유지나 아니면 부문별 축소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995년 말에서 1996년 초까지 계속된 프랑스 전역에서의 파업은 이를 말해 주고 있으나 집권정당의 인기도 하락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프랑스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자크 시락의 정권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예로서 프랑스 사회복지 중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는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les)는 그 예산이 1996년 1월 현재 동결될 전망이고,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算定基準月額表 역시 변동이 없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1997년)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算定基準月額表를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1997년까지는 수당 지급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 복지예산은 영아수당에서도 예외는 아닌바, 지금까지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임신한 여성에게만 한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프랑스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피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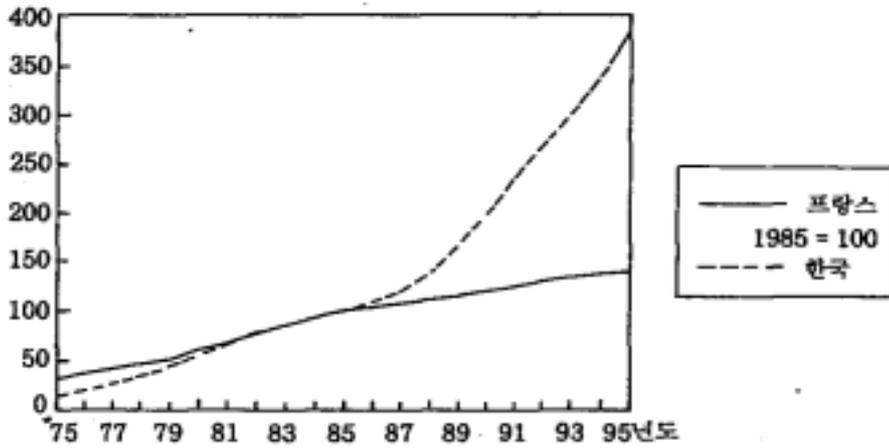
1. 임금-노동비용의 추이와 구매력

본 절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임금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하여 임금과 노동비용의 추이 그리고 가계의 구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가. 임금과 노동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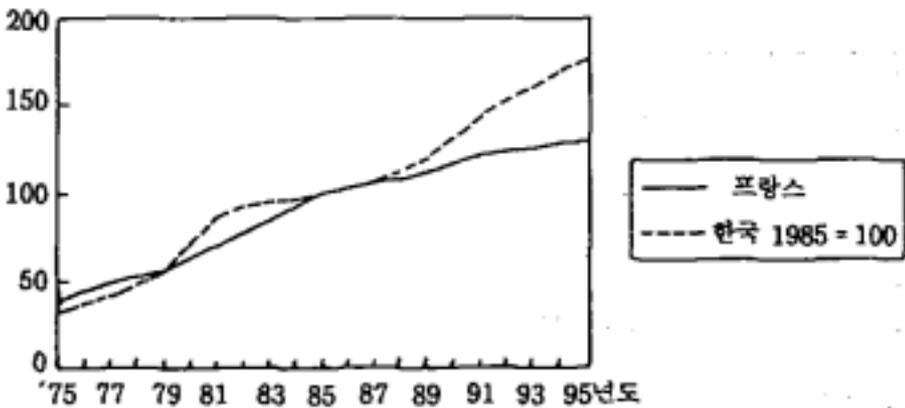
임금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명목임금은 1985년의 그것에 비해 1995년 현재 약 1.4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약 3.8배 증가하였으므로 한국의 명목임금은 프랑스의 그것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프랑스와 한국의 물가상승에 관하여 비교하면 프랑스는 1985년과 비교해 1995년에는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에 약 1.7배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그러므로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1995년의 실질임금수준이 1985년의 그것에 비해 약 1.07배 증가한 반면 한국의 경우 약 2.2배 증가하였다. 1988년부터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 이러한 현상은 1988년부터 본격화되었던 노사분규로 인한 높은 임금상승의 결과이다.

[그림 1] 한국 · 프랑스의 명목임금추이 비교(198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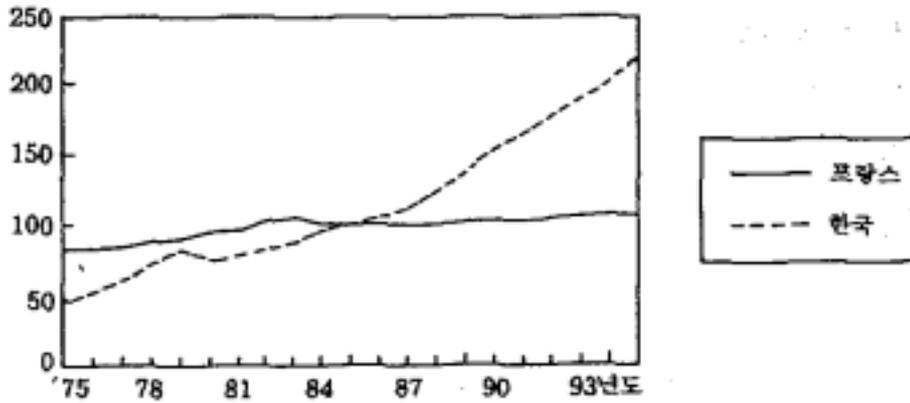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4, 1986, 1980.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1975~95.

[그림 2] 한국 · 프랑스의 물가지수추이 비교(1985년=100)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4, 1986, 1980.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197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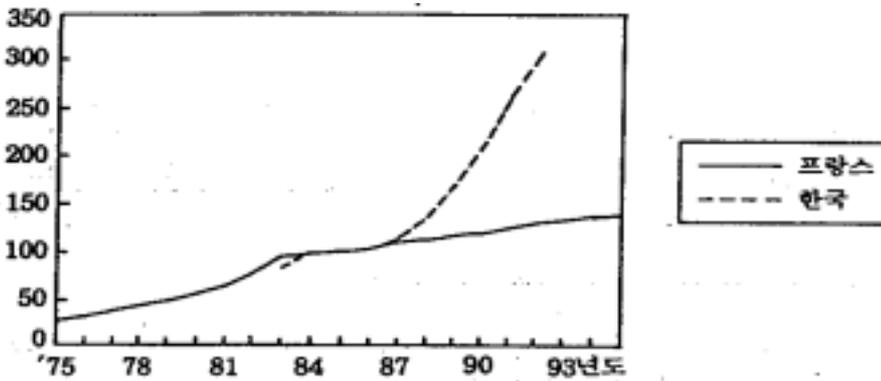
[그림 3] 한국·프랑스의 실질임금추이 비교(1985년=100)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4, 1986, 1980.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197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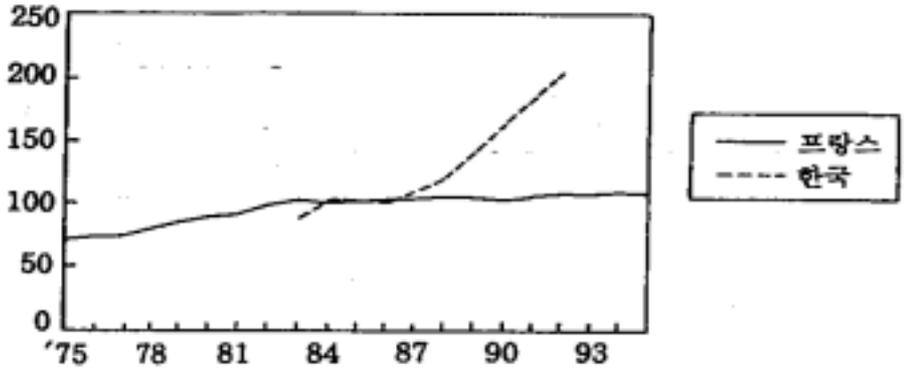
위의 [그림 1, 2, 3]에 의하면, 프랑스의 실질임금 수준은 1975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물가상승을 상쇄하고 일정수준의 실질임금을 유지시켜 주는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보전은 주로 가족급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족급여에

[그림 4] 명목노동비용 추이 비교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4, 1986, 1980.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1975~95.

[그림 5] 실질노동비용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4, 1986, 1980.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1975~95.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노동비용의 변화를 보자. [그림 5]는 실질노동비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의 노동비용 자료는 1983~92년까지의 제조업부문의 노동비용만 입수 가능하였음). 1985년과 1992년의 명목노동비용을 비교할 때, 프랑스의 경우 약 1.5배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은 약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노동비용을 비교하면 프랑스는 약 1.06배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한국은 약 2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실질노동비용이 약 2배 증가한 것은 실질임금상승(약 1.77배)을 상회하는 것으로 노동비용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볼 때 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비용 등 임금 이외의 요소들이 실질임금 상승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 구매력

1993년 프랑스 사기업부문 전체의 명목임금 총액⁴⁾은 전년도에 비해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수의 2.5% 감소와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2.2% 상승이 서로 상쇄된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현상은 1991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3년도에 사기업부문의 1인당 임금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부분적 실업 및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의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사기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1992년에 비해 1993년 명목임금은 2.5% 증가하였으나, 실질 임금은 오히려 0.4% 감소하였다.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한 구매력 저하를 막아주는 완충 및 조작용의 역할을 프랑스에서는 사회급여가 하고 있다. 사회급여는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해당가구에 지출되는데 다음 <표 1>은 전체가구가 수혜받은 사회급여(Prestation sociale)⁶⁾의 항목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가구가 수혜받은 전체 사회급여액의 매년 증가율은 1990년과 1993년 사이 매년 6.0%에서 6.6%씩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의료급여와 출산급여의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가족급여와 실업급여의 증가율은 가속되는 추세인데 특히 1993년 들어 가족급여의 증가율은 괄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빠른 증가로 인해 가족급여는 실업급여와 함께 프랑스 가계소득 및 구매력의 저하를 보충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회복지 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실업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토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표 1> 프랑스 전가구의 사회급여 수혜 변화율(전년도에 대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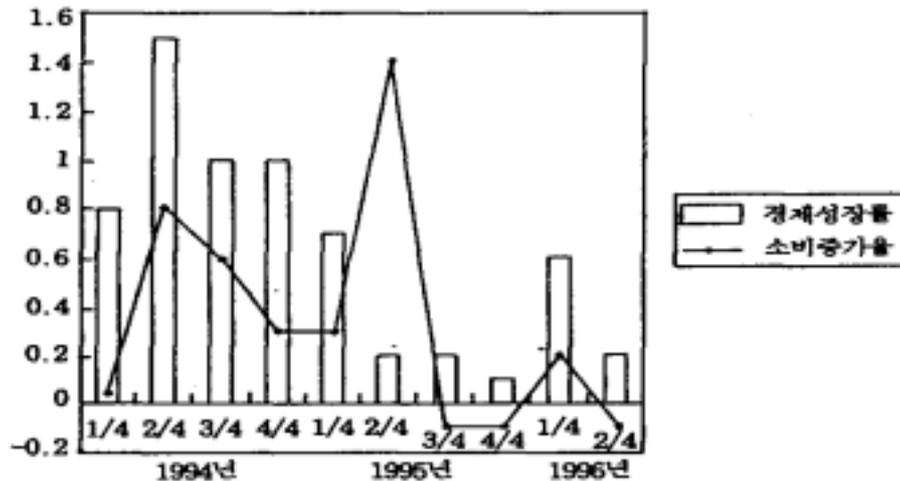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3년도 사회급여 질대역수(단위: 10억 프랑)
의료급여	6.3	5.4	5.9	3.9	486.8
고령·생존급여	5.9	5.8	6.1	5.7	892.0
출산급여	9.7	5.7	2.1	1.2	20.9
가족급여	3.7	3.1	3.9	12.5	212.9
실업급여	9.0	9.4	13.2	12.5	165.8
전체	6.1	6.6	6.0	6.6	1810.8

자료 : INSEE, Compte satellite de la protection sociale. Rapport sur les comptes de Nation, 1993.

1995년 12월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는 앞으로의 각종 수당의 축소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결국 1996년 소비가 정체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96년 1/4분기의 프랑스 소비증가는 완전히 정체상태이며, 2/4분기 또한 악화일로에 있다. 일반적인 예상은 1996년 한 해 동안 프랑스의 소비는 무기력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소비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조세부담

[그림 6] 프랑스의 가계소비(%)



자료 : IN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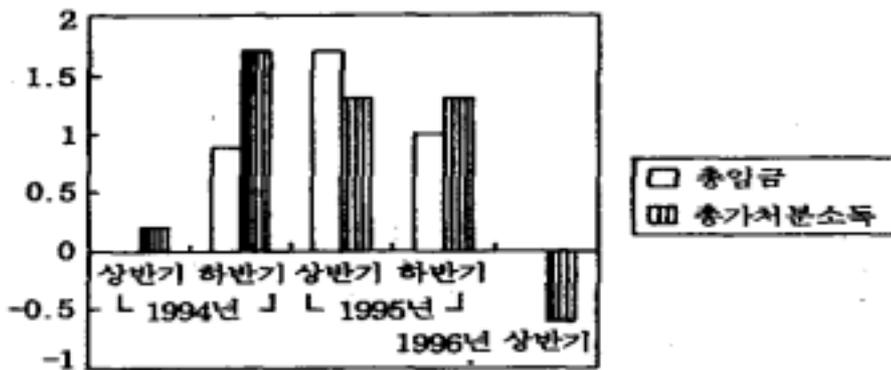
<표 2> : 프랑스의 저축률

	1994		1995		199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저축률	13	13.5	13.6	14.3	13.8

자료 : INSEE.

의 증가가 그 주요 이유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국민들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이러한 저축의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1994년 상반기의 프랑스 저축률은 13%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여 1995년 하반기의 저축률이 14.3%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비감소 추세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림 7] 프랑스의 구매력 추이(%)



자료 : INSEE.

프랑스의 구매력에 관하여 [그림 7]을 보면, 1994년 상반기 총임금의 증가율은 0%를 기록하였으나 1994년 하반기에 0.9%, 1995년 상반기에는 1.7%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1995년 하반기에는 다시 1% 증가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1996년 상반기에는 0%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총가처분 소득의 추세도 총임금의 그것과 비슷한데, 1994년 상반기에 0.2%에서 하반기에는 1.7%로 증가세였고, 1995년에 들어와서는 상·하반기 모두 1.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6년 들어와 프랑스에서 사회보장은 축소과정에 있으나, 사회보장을 위한 각출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NSEE의 1996년 상반기 총가처분소득(즉 각종 각출금을 제외한 후의 구매력)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는 -0.6%로 매우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주석 1) 서유럽 국가의 실업률 통계

	1991	1992	1993	1994
프랑스	9.4	10.4	11.7	12.6
독일	4.2	4.6	6.1	6.9
이탈리아	9.9	10.3	11.1	11.8
네덜란드	7.2	8.0	9.6	10.3
스페인	16.0	18.1	22.4	23.9
스웨덴	2.7	4.8	8.2	8.0
핀란드	7.5	13.0	17.7	18.2

주석 2) Moghadam R., "Why is Unemployment in France so High ?". IMF Working Paper. May 1994.

주석 3) 1993년 프랑스 사회보호를 위한 지출이 GDP의 34.5%인 2조 5,090억 프랑(약 370조 원)에 달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구서독), 영국, 이탈리아보다 높으나 네덜란드보다는 약간 낮은 비중이다. 그런데 1996년에 프랑스 사회보호는 500억 프랑(약 7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석 4) 명목임금 총액은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총임금근로자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주석 5) 1994년 프랑스 INSEE의 국가회계보고서(Rapport sur les compte de la Nation, 1993).

주석 6) 사회급여는 사회보험, 가족급여,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이들에 부수적인 급여와 서비스체계인 사회복지 서비스체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의 한 제도 (régime)로서 위의 제도들간의 복합적 연계를 통하여 의료, 고령, 출산, 가족, 실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2. 소비행태

1980~93년까지의 프랑스 전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자.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프랑스 전가구의 소비지출은 꾸준히 늘어왔는데 지출 내용별로 보면, 거주비와 의료 및 건강 그리고 교육비의 지출비율이 다른 지출항목보다 빨리 증가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을

<표 3> 프랑스의 전가구 소비지출 현황

	1980	1990	1991	1992	1993
총지출(프랑)	164만	386만	404만	421만	430만
지출내용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단위 : %)					
식료품·담배	21.4	19.3	19.1	18.6	18.6
의류	7.3	6.6	6.4	6.2	6.0
거주비·연료	17.5	19.0	19.9	20.3	21.1
거주비만 별도	11.6	14.6	15.2	15.7	16.5
가구 및 가전류	9.5	8.0	7.8	7.6	7.5
의료 및 건강	7.7	9.5	9.8	10.0	10.3
교통·통신	16.6	17.0	16.3	16.3	15.9
오락·교육·문화	7.3	7.6	7.5	7.5	7.5
교육만 별도로	0.37	0.55	0.53	0.56	0.58
기타 재화 및 서비스	12.6	13.1	13.1	13.0	13.0

자료 : INSEE, Annuaire Statistique de la France, 1994, Vol.98.

<표 4> 근로자 가구 평균소비 지출비율(1985년)

	육체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지출내용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식료품, 담배	24.4	18.0
의복	7.1	7.7
거주비	17.5	19.0
교육	0.52	0.69

자료 : Family budgets, Comparative tables 1988-Allhouseholds Denmark-Greece-France-Ireland-Luxembourg-Netherlands, Theme 3c, EUROSTAT, 1992.

제외한 항목에 대한 지출비율은 1980년의 그것과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총지출에 대한 거주비의 지출비율은 1980년 11.6%에서 1993년 16.5%로 상승, 그동안 프랑스의 주거비용과 교육비 그리고 의료 및 건강에 대한 비용 변화가 타항목에 비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에서 1993년 프랑스 전가구가 가계수입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식료품·담배(18.6%), 거주비(16.5%), 교통·통신(15.9%) 등의 순으로 나가는데,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큰 편이다. <표 4>의 프랑스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육체근로자 가구의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이 사무직근로자 가구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육체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거비 지출에 관해서는 육체근로자 가구의 주거비 지출비중이 사무직근로자의 그것보다 낮다. 이는 주거형태 및 지역 등 주거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전가구의 경우나 근로자 가구의 경우 모두 전체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이는 프랑스의 교육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아주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며, 대학에서는 도서관비, 서류비, 양호건강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700~800프랑(약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을 등록금으로 지불하므로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가구의 소비지출-

한국의 전가구와 근로자 식료품 지출비중은 1985년의 37%에서 1994년 29%대로 감소하였으며, 주거비도 근로자 가구의 경우 4.7%에서 3.9%로, 전가구의 경우 5.0%에서 4.1%로 떨어졌다. 이러한 통계치는 예상을 다소 빗나가게 하는데, 주거비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하락하여 왔다는 사실은 의문을 품게 한다. 참고로, 주택가가 가파른 상승을 기록한 서울 지역의 전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과 서울시의 근로자 가구의 거주비의 전체 지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1985년 서울시 전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5.3%에서 1994년에는 3.9%로 하락하였으며, 서울시 근로자 가구만을 보면, 1985년의 주거비 비중이 4.9%에서 1994년에 3.7%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비에 대한 지출과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은 증가추세였는데 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985년에 6.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4년의 경우는 2%포인트 증가한 8.4%를 기록하였으며, 전가구의 경우 1985년 7.4%에서 1994년에는 9.0%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근로자 가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항목은 주거비보다도 교육비의 지출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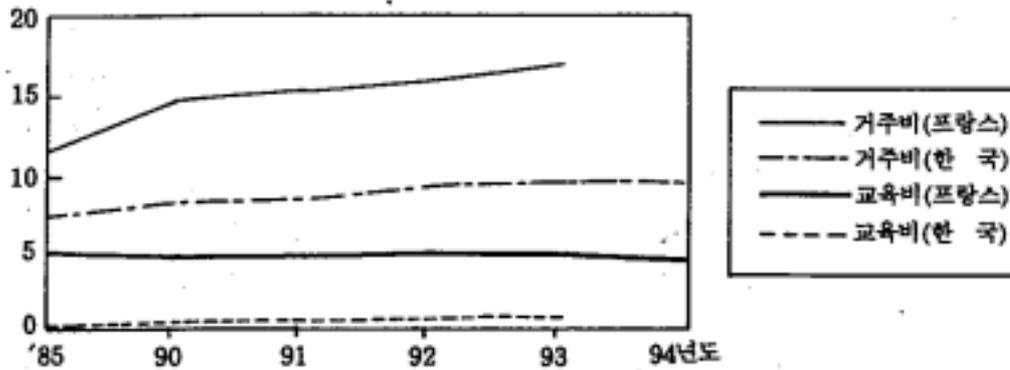
한국의 전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1985	1990	1992	1994
식료품	35.7(37.7)	32.0(32.5)	30.0(30.4)	29.7(29.5)
주거	5.0(4.7)	4.7(4.6)	4.7(4.2)	4.1(3.9)
광열·수도	7.5(7.4)	4.5(4.5)	4.1(4.1)	4.0(3.9)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4.8(4.9)	5.7(5.8)	5.3(5.5)	5.0(5.0)
피복 및 신발	7.7(7.8)	8.3(8.4)	8.0(8.0)	7.7(7.7)
보건의료	5.5(5.4)	5.2(5.3)	5.4(5.4)	5.0(4.9)
교육 교양오락	11.1(10.3)	12.8(11.9)	13.9(13.3)	14.2(13.5)
교육만 별도	7.4(6.4)	8.1(7.2)	9.0(8.3)	9.0(8.4)
교통·통신	6.4(6.5)	8.4(8.4)	8.9(9.2)	11.3(12.0)
기타소비	14.4(15.2)	18.3(18.6)	19.6(20.0)	19.0(19.5)

자료 : 통계청, 「1994 도시가계연보」, 1995.

[그림 8]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자료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 전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비슷하므로 그 대리변수로서 전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위의 그림에서는 주거비의 비중을 프랑스의 경우 거주비(프),

[그림 8] 프랑스와 한국의 주거비 및 교육비 지출비율



한국의 경우 거주비(한), 그리고 교육비의 비중 역시 프랑스의 경우 교육비(프), 한국의 경우 교육비(한)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그림 8]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전가구 주거비 비중이 90년대 들어와 1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상당히 높은(특히 한국과 비교할 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한국은 4~5% 수준이며 더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한국의 주택 임대나 구입 방법이 프랑스의 그것과 틀린 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¹⁾ 교육비의 비중은 [그림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1%를 넘지 않는 아주 적은 지출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교육이 국가의 보조로 거의 무상에 가깝다는 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 비해 한국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훨씬 높은 편인데 1994년 현재 9%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비 지출비중은 주택비용 지출비중보다도 높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욱이 1985년에 비해 꾸준히 지출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다.

주석 1) 프랑스의 경우 전세라는 주택임대제도가 없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여러 금융기관을 통하여 장기간(보통 20~30년 정도)에 걸친 주택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택을 임대하였던지 아니면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던지간에 매달 주택비용으로 임대료나 대출상환금을 위한 지출이 있게 마련이므로 月住居費用이 분명하게 산출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단기간에 주택구입을 지불하므로 이미 지불된 비용을 시세금리로 계산하여 월 얼마 정도를 주택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지불한 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2년간) 주택임대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므로 프랑스에 비해 주택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경우 모두 가계소비지출에서 주택비용이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택비 지출자료는 현실을 다소 잘 못 묘사하기 쉽게 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택비 비중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Ⅲ. 프랑스의 社會保護制度와 勤勞者福祉制度

1.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

본 연구의 중심 테마인 프랑스의 근로자복지제도를 고찰하기 전에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용어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나라마다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용어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개관을 살펴보자.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대신해서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랑스에서 사회보호제도는 사회보장,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이다. [그림 9]에서 프랑스의 사회보호와 한국의 사회보장을 비교해 보자.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사회보호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프랑스의 사회보호를 한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의 의미로 사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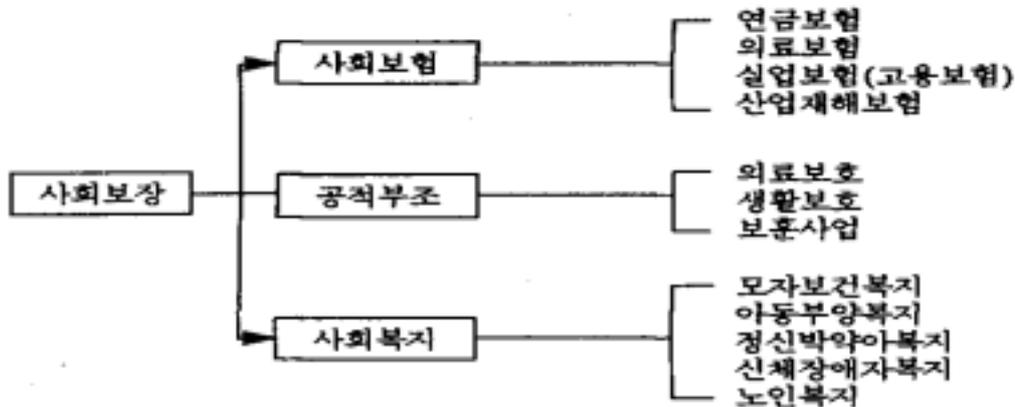
가. 프랑스 사회보호의 배경

프랑스의 사회보호의 기원은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의 사회보호란, 빈민들을 수용하는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시작된 산업화는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 지역의 노동력이 대도시로 대규모 이동을 하였고 이러한 인구이동

[그림 9] 프랑스의 사회보호



[그림 10] 한국의 사회보장



은 지역의 상부상조 기능을 축소시켰다. 또한 급증한 임금노동자들은 그들의 불안정한 생활에 불안을 느꼈고, 결국 갈수록 노사간의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고급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사고와 노령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금을 설치하였고, 이는 훗날 국가의 사회보호제도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근로자들 외에 일반근로자들은 별다른 생활안정대책이 없이 빈곤화 현상은 계속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많은 사상가, 철학자, 정치가들에 의하여 토의되었다. 1889년 파리에서는 세계공적부조총회(Congrès International de l'Assistance publique)가 개최되었고, 기본원칙들이 제정되면서 프랑스의 공적부조는 그 형성기에 들어갔다. 세계공적부조총회가 끝나고 4년이 지난 후 프랑스에서는 의료부조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공적 부조를 위한 국가재정보조법, 아동보호법, 노인 및 장애인 부조법 등 일련의 사회부조 관련 법령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부조는 일반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호제도 즉, 사회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령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맞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 귀속되어 있던 알사스-로렌지방의 프랑스로의 반환은 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독일은 프랑스보다 사회보험제도가 앞서 있었으므로, 알사스-로렌 지방 주민들은 이미 사회보험의 제도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 지역의 사회보험을 프랑스 전역에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²⁾, 그 결과 프랑스에도 사회보험제도가 1932년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처음 시행될 때의 사회보험 적용범위는 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사망에 국한되었으며, 실업은 그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가족수당제도가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해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35년에는 의무화되기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프랑스 사회보호제도는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가 1945년 사회보장 조직에 관한 법령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임금근로자와 그의 가족이며,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특수제도(régime spéciaux), 자영상공인들은 자유상공인제도, 농업종사자들은 농업종사자제도에 각각 가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틀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데, 노령자들을 위한 수혜가 증가해 왔으며, 1980년대에는 최저생계보장(revenu minimum d'insertion)이 실시되기 시작한 점들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가 틀이 잡히고 또한 경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적 부조의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공적 부조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 사회에 경제적으로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53년 공적 부조제도는 이러한 인식하에 개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명칭도 사회부조로 바뀌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의 빈틈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는 '프랑스 사회보호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보호가

전국민에게 확대 시행된 1945년 10월 4일을 사회보호 원년으로 삼고 있다. 1995년 프랑스에서는 사회보호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사회보호를 위한 1945년 10월 4일 법령은 국가 레지스탕스 위원회가 제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정신을 저변에 깔고 있다. 즉, "고용을 통하여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삶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그 당시 프랑스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전국민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44년 프랑스 정부는 산재하여 있던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 및 복지 프로그램들을 사회보호의 체계에 의무적으로 통합시켰다. 이때 다음의 세가지 원칙이 성립되었다. 첫째, 사회보호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만든다. 둘째, 이 기관의 재정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적 납부금을 모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셋째, 이 기금은 각출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과 경영자협회를 위하여 운영·관리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훗날 프랑스 사회보호의 근간이 되었다. 현재 프랑스 전국민의 99.8%가 이 사회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80%가 다시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호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운영과 사회부조의 재정운영이 이분화되어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에 대해 국가는 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재정운영은 일반적으로 원조를 하지 않는다. 즉 노사 쌍방이 사회보장 재정의 주원천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면 먼저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즉 일반제도 및 특별제도 등에서 서로 보충 및 충당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국가가 원조하는 원칙이 있다. 사회보장 수입의 약 65%는 노사 쌍방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각출하는데, 이 중에서 약 7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약 30%를 근로자가 부담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회보장 수입의 나머지 35%는 독립자영업자의 보험료, 기타보험료, 사회보장관련세, 공공부문부담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차례로 살펴보자.

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와 그동안 빈번했던 부분적 혹은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아주 복잡다기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³⁾ 이 제도를 단순하게 분류하면,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 특별제도(Régime speciaux), 자영상공인제도(Régime des non-salariés non-agricoles) 그리고 농업종사자제도(Régimes agricoles)로 구성되어진다. 이 중에서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는 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프랑스 인구의 약 85%가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특별제도(Régime speciaux)는 주로 공무원과 광부, 선원 그리고 기타 철도, 전기, 가스 등 국영기업체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자영상공인제도(Régime des non-salariés non-agricoles)에는 자영업자, 그리고 농업종사자제도(Régimes agricoles)에는 농업종사자가 가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반제도와 특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과 사용자로부터 보험료가 각출된다. 그리고 자영상공인제도, 자영업자제도, 농업종사자제도는 가입자의 추정소득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다.

<표 5>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

	일반 임금근로자, 공무원, 군인	자 영 업 자		무 직
		비농업부문	농업부문	
질 병(현물급여)	○	○	○	○
질 병(현금급여)	○	×	×	×
출 산(현물급여)	○	○	○	○
출 산(현금급여)	○	×	×	×
장 애	○	×	○	×
노 령	○	○	○	○
유 족	○	×	×	×
산업재해와 직업병	○	×	○	×
실 업	○	×	×	○
가족부양	○	○	○	○

주 : '○' 표는 급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 표는 급여 안됨을 의미함.
 자료 : J.J. Dupeyroux,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Paris, Dalloz, 1988.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는 먼저 일반 임금근로자와 공무원, 군인은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으로부터 수혜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무직자에게는 질병(현물급여), 출산(현물급여), 유족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 5>에서 '○'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의미하며, '×'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다. 사회부조

사회보호 중 사회부조는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운영은 국가와 도⁴⁾ 그리고 면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대상인 반면 사회부조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처럼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부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Commission d'Admission)를 거쳐 부조의 혜택 여부와 그 수준이 결정된다. 사회부조는 아동부조⁵⁾, 노인부조, 의료부조, 수용서비스⁶⁾, 장애자부조, 가족부조, 실업부조로 구성되며⁷⁾, 사회부조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먼저 현물급여로는 병원진료⁸⁾, 수용⁹⁾, 거택간호¹⁰⁾, 아동부조를 위한 현물지급, 소송비용을 위한 법정부조가 있으며, 현금지급으로는 일반수당, 주택비¹¹⁾, 교육비의 시설수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용돈 등이 있다.

사회부조의 전달은 국가, 도, 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위별 복지행정을 살펴보자. 먼저 국가의 사회부조에 대한 개입은 사회보호부에 속해 있는 도단위 보건복지행정국(DDASS)과 지방단위 보건복지행정국(DRASS)을 통해 이루어 진다. 사회보호부는 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등 일반적인 규칙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 개입한다. 도 예산의 약 60%가 보건복지에 지출되는 것처럼, 사회부조는 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는 도단위 보건복지행정국이나 지방단위 보건복지행정국은 1982년에서 1986년에 걸친 지방분권화 작업 이후 사회부조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에 지방자치기구인 도위위원회(Conseil général)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부조의 도단위 전달은 도단위 보건복지행정국(DDASS)과 도위원회(Conseil général)가 시행을 담당하는데 이들의 주업무는 사회부조의 전달을 위한 조직 및 집행이다. 면단위의 사회부조 전달은 도단위나 지방단위 행정기구로 대폭 이양되어 그 기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 면단위에는 사회복지센터(CCA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하여 주로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를 해결한다. 사회복지센터는 면장의 지휘체계에 있지만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는, 즉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사회부조를 위한 재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집행에는 국가가 깊이 개입한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action sociale)

사회복지 서비스는 프랑스의 다른 사회보호제도와 그 성격이 틀리다. 즉 사회보호제도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는 민간과 정부 모두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활동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사회사업가나 자원봉사단 등의 복지 공급자들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다. 그 대표적인 단체는 사회보험금고, 가족수당금고, 농업종사자사회보장금고, 국가 및 공공단체, 기타 사설단체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력도 사회사업단체나 기타 단체의 복지전문인력,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다.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행정단위와는 상관없이 인구수에 따라 3,000~5,000명 정도로 구역화하여 활동한다. 이 구역에 파견나온 전문 복지가와 그 구역을 잘 알고 있는 구역복지 전문가가 함께 일을 한다. 주업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다. 예를 들면, 복지에 관련된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부터 사회사업가들로부터 복지현금을 받아 해당구역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일도한다. 각 사회복지 구역은 도나 지방의 보건사회복지국(DRASS)의 행정지도를 받는다. 즉 각 구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해당 지방의 보건사회복지국(DRASS)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마. 실업급여제도¹²⁾

프랑스의 실업급여에는 다음 세 가지 제도, 즉 실업보험제도, 연대제도(régime de solidarité),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제도에 의해 지급된다. 실업보험제도는 1958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적용대상은 공무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이 제도의 관리는 지역별로는 상공업고용협회(ASSEDIC)와 이 협회들을 통합한 전국상공업고용협회(UNEDIC)가 담당하고 있다. 상공업고용협회는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을 담당하며, 전국상공업고용협회는 실업보험의 전체적 조정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관리는 노사 쌍방이 함께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직업안내소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령이 60세 또는 연금수혜 연령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적들을 갖춘 신청자는 기본급여, 특례기본급여, 종료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기본급여는 실업상태 이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를 위한 실업급여이며, 기본급여의 지급기간이 완료되면 종료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기본급여나 종료급여나 모두 신청자의 실업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도 있다. 특례기본급여는 실업상태 이전 12개월 동안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들을 위해 지급되는데 지급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은 안된다.

연대제도(régime de solidarité)는 국가가 운영하는데 급여지급의 대상자는 실업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들이나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 이들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위의 급여대상자들의 취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984년 실업보험에서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다.¹³⁾ 연대제도의 급여는 취직촉진급여와 특정연대급여로 구성되며, 급여는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상공업고용협회(ASSEDIC)에서 지급한다. 연대제도의 재정은 공무원들로부터의 각출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제도는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나 조업단축에 따른 임금의 일부분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보상적 의미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데, 그 재원은 사회부조를 축으로 추가적인 기금을 해당기업이 보조하여 운영된다. 이 제도의 급여수준은 상실한 근로자 임금의 50%수준인데, 우선 법정노동시간 이하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회부조에서 최저임금의 70%를 시간당으로 지급하고, 기업측에서 해당근로자시간당 임금의

50%까지를 지급하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액수와 해당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차액을 지급하여 임금의 50%가 되도록 한다.

주석 1) 사회부조는 원래 공적 부조(assistance publique)라고 불렸으나 1953년 부조제도의 개혁 때 사회 부조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주석 2) 임금근로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프랑스의 농업인구는 전국민의 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회변화, 즉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의사들의 반대로 프랑스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주석 3) 그 예로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144개의 제도들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충제도(régimes complémentaires)를 포함하면 287개의 제도가 있다.

주석 4) 프랑스는 面-道-地方-國家(commune-département-région-Etat)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주석 5) 주로 고아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며, 빈곤층 자녀들의 학비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주석 6)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복지시설에 수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조.

주석 7) 장애인부조와 가족부조는 1975년을 기해서 그 재정과 운영이 가족수당제도로 이양됨으로써 사실상 사회부조에 속하지는 않는다.

주석 8) 일정? 그 수준 미만의 환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진료 및 간호. 그리고 의료기기를 부조.

주석 9)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해당.

주석 10) 거택간호의 부조도 병원진료와 동일하지만 의료진의 왕진료가 포함된다.

주석 11) 빈곤가구나 노인들에게 주로 지급되며, 그 재원은 주로 사회보장의 주택수당에서 나온다.

주석 12)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은 사회보장연구소편. 『フランスの社會保障』, 동경대학출판회, 1989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석 13) 1984년 이전에는 실업보험에서 연대제도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2. 근로자복지제도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에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주택, 교육, 그리고 보육에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제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는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제도는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는 사회보험과 가족급여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사회보험에는 질병·출산·장애·사망보험, 노령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주목적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게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학생이나 실업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1970년부터 일반제도 내에 개인보험(assurance personnelle)을 설치하고 직업이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급여는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하락을 방지, 즉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주택, 교육, 보육 등의 수당을 지급한다.

<표 6>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기본수당		종료수당		최 장 지 급 기 간
	지급 기간	연장 가능 기간	지급 기간	연장 가능 기간	
- 실업상태 이전 12개월 동안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나 6개월 미 만인 경우	3개월				3개월
- 실업상태 이전 12개월 동안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8개월	2개월	6개월	1개월	15개월
50세 이상	9개월	6개월	9개월	3개월	21개월
- 실업상태 이전 24개월 동안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실업상태 이전 15년 동안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고 실업상태 이전 12개월 동안 실업 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14개월	5개월	12개월	4개월	30개월
50세 이상	18개월	15개월	15개월	9개월	45개월
- 실업상태 이전 36개월 동안 실업보험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21개월	12개월	15개월	9개월	45개월
50세 이상	27개월	18개월	18개월	9개월	6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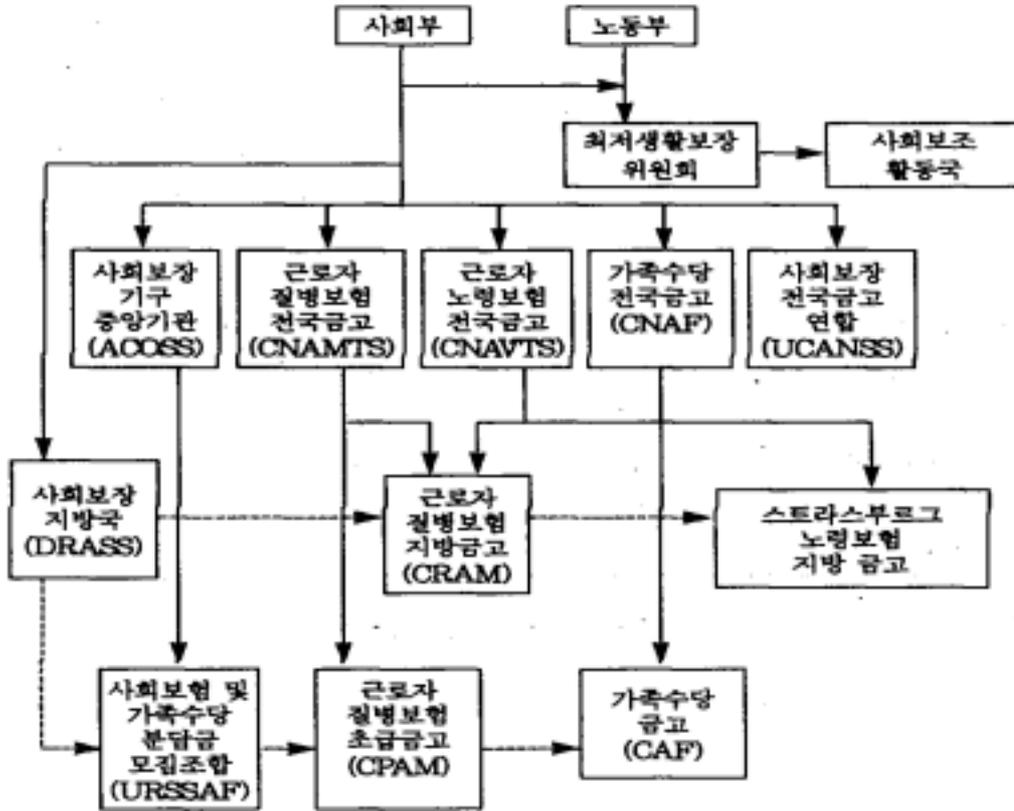
1995년 사회보장제도가 지급한 수혜금인 1조 5,000억 프랑(약 225조 원)중에서 1조 프랑이 일반제도에 의해 수혜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전체 사회보장에서 일반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2에 달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지원은 다음5개의 기금, 즉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근로자

<표 7> 연대제도 급여의 수혜자격과 지급기간

연대제도급여 종류	수혜자격	지급기간
취직촉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경력이 없는 16세부터 25세 이하의 젊은이 - 과부나 이혼녀 - 刑期를 마치고 나온 자 등과 특수한 경우에 있는 자 	최장 1년
특정연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의 최장 지급기간이 지난 장기실업자 - 실업보험에 속하지 않는 예술가와 같은 특수직업 종사자 	6개월 그러나 일정한 취업연수를 만족시키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급기간의 제한이 없음.

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그리고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UCANSS)에서 나온다. [그림 11]에는 사회보장제도¹⁾의 운영조직이 나타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집권적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질병보험을 담당하는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노령보험을 담당하는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가족급여를 담당하는 가족수당전국금고(CNAF)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세 개의 금고는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이 총괄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을 통하여 마련한 보험금과 국가보조금을 세 개의 금고에 나눈다. 한편 가족수당전국금고(CNAF)는 가족수당의 예산·운영, 가족에 관련된 사회복지 활동의 전개 등의 사업을 하며, 전국에 115개 사무소를 갖고 있는 가족수당금고(CAF)를 감독한다. 全國金庫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²⁾은 프랑스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로서 일반제도 기금의 관리를 전담한다. 각 지방에 사무소가 있는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은 이름 그대로 기금모집을 한다. 같은 사회부 안에 있는 가족수당전국금고(CNAF)는 프랑스 전국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역업무를 담당하는 가족수당금고(CAF) 지역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담당지역 규모를 보면,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UCANSS)은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며, 근로자질병보험지방금고(CRAM), 스트라스부르그노령보험지방금고는 지방담당 기관이며,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 모집을 위한 협회(URSSAF), 근로자질병보험초급금고(CPAM), 가족수당금고(CAF)는 도단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저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부와 노동부의 중간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의 일정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사회보조활동국을 두고 있다.

[그림 1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조직표



주 : 괄호 안의 영문약자는 각 기구의 佛語 명칭의 약자임.
 자료 : C.E.C.,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 MISSOC, 1992.

-전국을 관할하는 금고 -

-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다음의 두 가지 보험을 담당한다. 질병·출산·장애·사망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이다. 이 금고는 위의 보험재정의 균형을 항상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금고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129개의 초급금고(caisses primaires)와 16개의 지역금고(caisserégionales)들과 연계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건활동도 하며, 아울러 의료검진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이 금고를 통해 1994년에는 4,730억 프랑의 법정 수혜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90%가 질병과 출산에 대해 지급되었다.
-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노령자보험과 미망인보험을 담당하며 아울러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활동을 한다. 1994년 이금고는 약 2,900억 프랑의 수혜금을 지출하였다.
-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가족급여 전반의 재정을 운영하며, 아울러 보건업무를 담당한다. 1994년 이 금고를 통해 1,600억 프랑이 수혜금으로 지출되었다.
-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사회보장에서 일반제도에 해당하는 모든재정운영을 책임지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격으로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의 활동망 전체를 감독 및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UCANSS)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 관련업무에 대한 협약에 서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일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18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정역할도 담당한다.

- 지방단위를 관할하는 금고 -

- 근로자질병보험지방금고(CRAM): 상급 금고인 근로자질병보험전국 금고(CNAMTS)와 연계하여 관할지방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주관하고 그리고 보건활동도 한다. 또한 관할 지방의 노령자보험과 미망인보험에 대해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의 업무를 대행한다.
- 스트라스부르그노령보험지방금고 : 과거 독일 영토였던 알사스-로렌지방을 관할하는 금고로서,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와 연계하여 노령보험을 담당한다. 그런데 알사스·로렌 지방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단위를 관할하는 금고 -

- 근로자질병보험지방금고(CPAM): 질병·출산·사망·보험금의 결제 및 지불업무와 장애 및 산업재해보험금의 결제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 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과 함께 보건활동도 담당한다. 이 금고는 전국에 129개사무소가 있다.
- 가족수당금고(CAF) : 지역 내의 가족관련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급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족을 위한 보건활동도 하는데 전국에 115개의 사무소가 있다.
-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 : 사회보장비 각출이 주업무이다. 각출금은 고용주, 근로자 자영업자로부터 납입된다.

가.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les)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les)는 사회보장제도 중 일반제도에 속해 있는데, 그 풍요로움이나 다양함에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가족급여제도의 시초는 근로자들의 부양가족들을 위하여 사용자가 그 임금에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금고를 설치한 데서 유래하며, 1932년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그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족급여 법규에 따르면 가족급여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의 경제성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가족급여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 그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시키는 상황이나 예외적인 지출에 의해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상황 등에 대응하는 소득보전적 기능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하다고 하겠다.

가족급여는 월별로 지급되는데, 액수의 계산을 위해 산정기초월액표가 공통으로 사용되며 각 가구의 수령액은 산정기초월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급여액의 인상은 이 산정기초월액의 개정 또는 비율의 개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산정기초월액은 매년 1회 개정을 해왔으나 가족정책을 중시한 미테랑 정권부터는 물가수준과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해당가구의 구매력 저하를 막기 위해 보통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위의 변화를 참작하여 재산정되어 왔다. 가족급여를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 가족보충수당(le complément familial)
- 영아수당(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 주택수당(l'allocation de logement)
- 가족보조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특별교육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 신학년수당(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편친수당(l'allocation de parent isolé)
- 양육수당(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 재택아동양육수당(l'allocation de garde d'enfant domicile)

이들 중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수당들을 살펴보겠다.

1)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은 사실상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첫 자녀부터 수혜자격이 부여되나 실제로 가족수당은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된다. 가족수당 수혜를 위한 자녀의 나이제한은 18세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0세까지 가족수당이 연장 지급된다.

- 자녀가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자녀의 월급이 최저임금(SMIC)의 55%를 초과하지 않을 때,
-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 자녀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 중에 있는 경우들이다.

자녀수당의 매월 지급액은 다음의 부양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1995년 1월 1일 현재).

- 부양자녀가 2명 있을 때 655프랑(약 10만 원)
- 부양자녀가 3명 있을 때 1,518프랑(약 23만 원)
- 부양자녀가 4명 있을 때 2,370프랑(약 36만 원)
- 부양자녀가 5명 있을 때 3,222프랑(약 50만 원)
- 6번째부터 계속되는 자녀마다 852프랑(약 13만 원)이 지급됨.

가족수당은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일정하게 지급되지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10세 이상 자녀에게 178프랑(약 3만 원), 15세 이상 자녀에게 316프랑(약 5만 원)이 지급된다.

2) 편친수당(l'allocation de parent isolé)

편친수당은 편친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양육하는 자녀가 없이 임신중인 편친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3) 특별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장애인 자녀를 위한 특별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이 불구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불구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불구 정도가 50% 이상(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함)일 경우 20세까지 매월 632프랑(약 9만5천 원)이 지급되며, 또한 전문의료기구의 판단에 따라 불구 정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정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1등급에는 474프랑(약 7만5천 원)이 추가 지급되며,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등급에는 1,422프랑(약 2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고도의 보조원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3등급의 경우 매월 5,159프랑(약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4) 영아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

영아수당은 임신 4개월부터 만 3세의 영아에게 해당되는데, 생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는 해당가구의 소득원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가구소득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3세 이하의 영아들의 탁아비용을 위해 최대한 월 2,000프랑(약 30만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임신이 시작된 주부터 14주 이내에 임신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임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 어느 한 가정에 부양자녀가 두 명 있는데 한 자녀의 연령은 3개월 이상이고 다른 한 자녀의 연령은 3개월 이하이며, 부부 중 한 명만이 일을 한다.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구소득은 107,000프랑(약 1,660만 원), 즉 월소득 약 140만 원인 경우 월별 영아수당은 약 62프랑(약 9만5천 원) 지급된다.

5) 신학년 수당(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자녀교육수당은 프랑스 교육제도상 대학까지 거의 무상에 가까우므로 주로 자녀들의 신학년 시작시 교복이나 학용품 구입비용을 부분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된다. 6세에서 16세의 자녀 각자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액은 산정 기초월액의 20%에 해당한다.

6) 양육수당(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양육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 지급되고 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 중 1명이 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나 정규노동시간을 반으로 단축한 경우 가계수입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 전 30개월 이내에 2년간 직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그 수당액은 직업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산정기초월액의 62.4%,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31.2%지급된다.

7) 재택아동양육수당(l'allocation de garde d'enfant domicile)

재택아동양육수당은 부모 모두 직업활동을 위해 6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1인 이상의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재택아동양육수당은 가구소득원에 상관없이 지급되는데, 단 수당액은 돌볼 자녀수와 자녀의 나이 그리고 고용된 보육사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돌볼 자녀의 나이가 3세 이상에서 6세 이하일 경우 3세 이하 자녀의 경우 때보다 보육수당이 50% 줄어든다.

예) 3세 이하 자녀 1명을 위해 지급될 수 있는 보육수당 최고액은 3,946프랑(약 60만 원)이며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그 반액인 최고 1,973프랑(약 30만원)이 지급된다.

8) 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가족급여에 포함되는 주택수당은 1948년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1972년에 들어와 가족의 지위향상에 관한 개혁에 의하여 주택수당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가족주택수당은 가족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과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으로 나뉘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장 '다'항의 주택보조에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여덟가지 수당 중에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 유지를 위한 수당은 특별수당, 영아수당, 신학년수당, 양육수당, 재택아동양육수당, 그리고 주택 수당을 들 수 있겠다. 그 밖에 가족수당은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나,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단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수당액이 차별화되므로, 이 제도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보조보다는 오히려 많은 자녀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다.

근로자 복지관련 수당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비용 보조: 특별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재택아동양육수당
- 교육비용 보조: 신학년 수당
- 주택비용 보조: 주택수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며, 대학교(박사과정 포함)의 등록금도 연간 약 10만원 안팎이므로 교육비용을 정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해당가구에 보조해주는 제도는 신학년수당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제도가 없다. 반면에 자녀부양을 위해 부모의 직업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나 자녀부양에 의해 저하된 가구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자녀를 위한 위의 수당들을 참조하면서 프랑스의 보육제도를 살펴본 후 주택수당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나. 보육제도

프랑스의 보육기관은 유아의 나이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로 생후 2개월부터 3세 미만까지 주로 영아들을 돌봐주는 영아원(Crèche collective)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프랑스 정부의 사회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입학조건은 영아의 모친이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영아를 맡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용부담은 지방공공기관과 가족수당기금의 보조를 기초로 하고 영아를 맡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영아원 비용이 결정된다.

다음은 취학전 교육기관으로서 유아원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아원의 입학이 허용되는 유아의 나이는 2~6세까지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일 6시간 동안 유아들을 돌봐주며 수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져 있다. 또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탁아소가 있는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3~6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그리고 생후 3개월에서 5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보육소(Halte-garderie)등 여러 종류의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3세 미만의 유아들을 보육하는 방법에 따라 전체 유아의 약 11%가 유아원(Ecole maternelle), 약 3%가 영아원(Crèche collective), 약 2%가 탁아소, 약 14%가 보육사에 의해, 그리고 약 11%가 가족에 의해 돌봐지고 있으며, 약 59%의 영아는 모친에 의해 보육되고 있다.

다. 주택보조

프랑스의 주택소유 현황은 사기업부문 내에 육체근로자 가구나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약 60%의 주택소유를 기록하고 있다. <표 9>의 1988년 프랑스 주

- 한국의 주택소유 상황 -

한국의 주택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전가구의 경우 약 5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약 59%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38.4%로 전국 평균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특수한 주택임대 형태인 전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월세보다 더 보편적인 임대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세와 월세를 합한 비중은 전국의 경우 47.0%로 주택소유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57.1%로 주택소유보다 무려 17%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택소유의 비율이 77.4%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한편 주택사정이 가장 나쁜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 비율이 전국의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이 낮은 소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전가구 주택소유 현황

(단위 : %)

	전국	시부	군부	서울
주택소유	49.9	40.5	77.4	38.4
전세	27.8	34.6	7.9	40.2
월세	19.2	22.5	9.4	19.5
전·월세합계	47.0	57.1	17.3	59.7
기타	3.1	2.4	5.3	2.0
합계(천가구)	11,354.5	8,462.4	2,892.1	2,814.8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 1995.

주택소유가구비율은 사기업부문 내 육체근로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그리고 전가구의 주택소유비율을 주택대출금 상환이 끝난 주택과 주택대출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그리고 임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표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주택소유 상황은 먼저 주택소유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전체 가구나 사기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나 서로

비슷한 주택소유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택보조는 크게 볼 때 주택수당(allocations de logement)과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로 구성되며, 주택수당은 다시 가족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과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으로 나뉘어진다.

가족주택수당(ALF)은 주어진 조건을 갖춘 가구나 개인에게만 지급되지만

사회주택수당(ALS)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주택수당이나 가족주택수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과 위생수준 그리고 거주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월세가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수당제도는 주택 구입시 감세혜택, 주택구입자금보조, 집주인과 세든 사람간의 관계설정 및 조정, 그리고 영세민주택개발 등을 포함한다.

1) 가족주택수당 (ALF)

가족주택수당은 어떤 가구가 적정한 주거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거비와 그 가구 소득수준과의 차이를 보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가) 가족주택수당 수혜 대상자

이 제도는 특정 수혜자 범주에 한정되어 수당이 지급된다. 즉 가족주택수당은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개인에게 해당된다.

-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 가족보충수당(le complément familial)
- 영아수당(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 가족보조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특별교육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표 8> 프랑스의 주택소유가구 비율(1988년, 단위%)

	사기업부문 내. 육체근로자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전체 가구
주택 A ¹⁾	17.9	19.7	34.4
주택 B ²⁾	39.8	38.8	24.5
A+B	57.7	58.5	58.9
임대 ³⁾	39.0	35.9	33.8
무료 ⁴⁾	3.3	5.7	7.3

주 : 1) 주택소유, 용자금을 지불 안함.

2) 주택소유, 용자금을 지불함.

3) 전세.

4) 주택비용 무료.

자료 : Family budgets. Comparative tables 1988-All households Denmark-Greece-France-Ireland-Luxembourg-Netherlands. Theme 3c. EUROSTAT, 1992.

위의 다섯 가지 수당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가구나 개인들은 가족수당(ALF)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나 개인

- 결혼 당시 신랑신부 모두 40세를 넘지 않은 젊은 부부로서, 양육하는 자녀가 없으며 결혼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나 개인들도 대상이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직계존속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60세 이상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①, 경제활동에 부적합하다는 인정된 자,
- ②, 독립운동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된 적이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다.

-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자손,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가족이나 친척이 신체장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관련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가족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주택 조건

- 일정한 위생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HLM 및 1948년 9월 1일 이후 건축된 주택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봄)

- 주택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의 수에 대한 최소한 면적의 기준과 위생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가족주택수당(ALF) 지급을 위한 주택면적기준

동거인수	최소한 면적
2인	25m ² 이상
3인	34m ² 이상
4인	43m ² 이상
5인	52m ² 이상
6인	61m ² 이상
7인	70m ² 이상
8인 이상	79m ² 이상

- 주택수당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수당 대상자의 주택면적이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출생 등으로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4년간 수당이 지급되며, 4년 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해당지역 도지사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또다시 예외적으로 수당지급은 2년간 계속된다.

다) 주택수당 지급범위

- 임대주택(기숙사, 퇴직자 숙소, 청년근로자 숙소, 기타 공적 목적의 주거지 등도 포함)에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나 주거비용에 대해서 지급되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에도 적용된다.

-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증축할 때도 건축행정의 규범에 따른다면 주택수당이 지급된다.

라) 주택수당금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원에 대한 조건

주택수당금은 해당가구의 소득원에 따라 변한다. 해당가구의 소득원이란 수당 수혜자의 소득과 그의 아내(혹은 남편)의 소득 그리고 조회 연도³⁾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한 사람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주택 수당금 산출은 가구소득원 모두를 포함하는데, 다음의 몇 가지 항목은 가구소득에서 제외된다.

- 7세 미만 어린 자녀를 유아원에 맡기는 데 드는 비용 중 5,000프랑까지는 소득에서 제외,

- 식료품 보조금(Pension alimentaire)

- 고령자나 장애자를 위한 조세 감면액 등등.

마) 주택수당금액의 산정

주택수당금은 가족주택수당이나 사회주택수당이나 동일하게 다음의 항목들에 의해 변화한다.

- 가구소득원

- 부양가족수

- 월세나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액
 - 거주지역
- 주택수당금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ALF = K \times ((L+C) - L_0)$$

ALF : 월주택수당

K : 소득과 부양가족에 기초한 계수

L :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C : 관리비

L₀ : 해당가구가 최소한으로 거주해야하는 주택의 최소 월세

예) 1994년 7월 1일에서 1995년 6월 30일 기간에 지급된 주택수당의 한예를 살펴보자.

부양자녀가 두 명 있고,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월세 4,000프랑(약 60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한 부부. 남편의 봉급은 연간 85,000프랑(월급여 약 1백 6만3천 원)이며 부인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월 가족주택수당 명목으로 685프랑(약 10만 3천 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월세의 약 17%를 주택수당으로 보조받는 것이다.

2) 사회주택수당 (ALS)

197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령자, 불구자, 25세 미만의 근로자, 실업자, 국가가 정한 최소 소득생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1993년 1월 1일 기해서 가족주택수당이나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모든 가구나 개인들이 이 사회주택수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 사회주택수당 수혜 중점 대상자

- 65세(노동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자 등은 60세) 이상의 노인
- 80% 이상의 중증장애자
- 25세 미만의 독신 근로자
- 실업자

나) 사회주택수당(ALS) 지급을 위한 주택조건

- 일정한 위생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HLM 및 1948년 9월 1일 이후 건축된 주택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봄)
- 주택면적 기준은 1인당 9㎡의 기준면적에 1인 추가 거주시 7㎡를 가산한 최저면적 이상일 것.

다) 사회주택수당 지급범위

- 임대주택(기숙사, 퇴직자 숙소, 청년근로자 숙소, 기타 공적 목적의 주거지 등도 포함)에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나 주거비용에 대해서 지급되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에도 적용된다.
-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증축할 때도 건축행정의 규범도 따른다면 주택수당이 지급된다.

라) 사회주택수당금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원 조건

사회주택수당금도 가족주택수당과 마찬가지로 해당가구의 소득원에 따라 변하며, 사회주택수당금 산출도 가족주택수당과 동일하게 가구소득원 모두를 포함하는데 사회주택수당의 특별한 조건으로서 수혜자의 속성이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수당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항목이 있다.

마) 주택수당금액의 산정

가족주택수당과 동일

3)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

1977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국가와 협약을 맺은 주택에 세든 사람이나 국가보조금으로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출(PAP)⁴⁾이나 협약이 맺어진 대출(PC)⁵⁾을 통하여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보조제도는 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1년 중 8개월 이상을 거주하는 주거주지에만 해당한다.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적용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의 신축이 증가한 것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의 보조금 수준은 앞에서 설명한 주택수당처럼 가구소득원, 부양가족수, 주택자금 대출상환금액, 그리고 거주지역 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그 예를 하나 살펴보자.

예) 1993년 결혼한 Y라는 부부의 경우 아직 자녀는 없고 남편 혼자 봉급 생활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 1993년 파리 교외 지역에 원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매월 2,500프랑(약 38만 원)을 은행에 상환하고 있다. 이들의 월수입은 6,700프랑(약 100만 원)으로 이들을 위한 APL은 854프랑(약 13만 원)이다.

<표 9> 프랑스 사회·직업계층별 주거비의 부담 상황(1984년 주택조사)

〈사회·직업 계층별〉	입차인 월임대료 (프랑)	주택소유자		주택수당 (AL)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	
		대출금 비율 (%)	월상환금 (프랑)	수혜율 (%)	주택 수당의 비율 (%)	수혜율 (%)	APL의 비중 (%)
농업자	877	68.7	2,620	7.1	42.6	2.7	41.4
자영업자	1,327	57.0	2,975	5.0	44.7	2.4	36.7
기업경영자	2,234	46.5	5,087	0.6	65.1	0.7	33.7
상급관리자	1,884	53.7	3,403	2.8	32.4	2.2	20.6
중급관리자	1,222	69.5	3,075	6.9	30.6	5.3	24.0
사무직	960	65.1	3,057	16.6	46.9	6.6	33.7
숙련노동자	833	80.1	2,669	18.5	47.0	11.4	37.4
단순노동자	751	75.9	2,260	21.9	67.5	9.2	49.3
퇴직자	770	16.0	2,002	9.4	64.0	1.8	62.2
기타 무직자	838	67.2	2,470	18.6	77.2	4.1	75.9
전 체	998	61.7	2,948	11.9	52.3	5.1	37.4

자료 : INSEE, *Données sociales*, éd. 1987, op. cit., p. 320.

4) 주택보조의 성과 및 문제점

지금까지 주택보조제도를 이루고 있는 가족주택수당, 사회주택수당, 그리고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 이렇게 세 가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럼 여기서는 이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먼저 주택수당(가족주택수당과 사회주택수당)과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의 수혜자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수당 수혜자는 1975년에 194.7만 명에서 1986년에는 237.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77년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86년에 주택보조금을 수혜받은 자의 수는 426.3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수혜받은 자들은

<표 10> 프랑스 세대구조별 주거비의 부담 상황(1984년 주택조사)

세대구조별	임차인	최근주택 소유자		주택수당 (AL)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	
	월임대료 (프랑)	대출금 비율 (%)	월상환금 (프랑)	수혜율 (%)	주택수당의 비율 (%)	수혜율 (%)	APL의 비중 (%)
단독세대							
40세 미만	923	53.9	1,977	9.8	44.3	3.2	43.5
40세 이상	706	16.2	1,998	12.8	70.0	2.1	67.9
대가족세대	964	20.0	1,252	6.3	80.4	1.4	50.6
편친가족세대	990	44.3	3,740	27.3	62.8	7.9	63.3
자녀없는 부부							
40세 미만	1,061	82.8	2,913	10.0	37.7	3.3	29.3
40세 이상	939	32.9	2,398	3.4	53.2	1.1	46.0
자녀있는 부부							
40세 미만	1,136	73.4	3,068	18.1	43.4	13.8	32.1
40세 이상	1,253	56.2	3,111	12.6	52.8	4.5	41.6
전 계	998	61.7	2,948	11.9	52.3	5.1	37.4

자료 : INSEE, Données sociales, éd. 1987, op. cit., p. 320.

대부분이 중·저소득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 중 대다수가 주택의 임차를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았다. 한편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의 수혜자들의 과반수가 국민주택(HLM)이나 기타 일반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수혜를 받았으며, 모든 주택보조 수혜자의 수혜 내역을 보면 전체 주택보조 수혜자의 4분의 3이 주택 임차를 위해 주택보조금을 수혜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보조제도는 프랑스 국민의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 임대에 들어가는 비용의 보조를 잘 수행하였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표 9>, <표 10>은 1984년 프랑스 주택조사의 결과인데, 이 표들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겠다. 프랑스에서 주택대출금 상환월액이 주택 월임차료보다 평균 3배 정도 높다. 세대구조별로는 임차가구간 임대료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주택소유가구간 월상환금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며,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보다 많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당해연도에 주택보조를 수혜받은 가구는 전체가구 중 17%에 달하며, 주택보조 수혜는 사무직근로자, 숙련근로자 그리고 단순근로자가 가장 높은 수혜율을 점하고 있다.

프랑스 주택보조제도의 수혜계층 수가 증가해옴에 따라 이 제도의 결과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 제도 자체의 결함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다. 이 제도의 결함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점은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대해서인데 주택보조를 위한 수혜자의 소득 파악이 부정확하여 수혜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석 1) 일반제도에 관련된 프랑스의 재정에는 국가가 감독권을 갖지만 회계의 운영은 국가가 하지 않고 노사 쌍방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주석 2) 프랑스 사회보장재원의 구성은 고용에 관련한 보험료(63.3%), 독립자영업자 보험료(4.2%), 기타보험료(0.8%), 사회보장 관련시(2.7%) 공공부문부담금(13.8%),

기타수입(13.3%)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고용관련 보험료는 고용주가 약 7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약 30%를 부담하고 있다.

주석 3) 'n'년도 7월 1일과 'n+1'년도 6월 30일 사이에 지불되는 수당금은 조회 연도 'n-1'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주석 4) 국가가 보조하는 대출(PAP) : PAP는 해당가구나 개인의 수입 조건에 따르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 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확장하거나 용도 변경, 그리고 오래 된 주택의 보수를 할 때 재정지원된다. 이때 대출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주석 5) 협약된 대출(Pret conventionnés) : 이 대출은 해당가구나 개인의 수입원 조건에 따르지 않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주거성, 비용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조건은 PAP와 유사하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프랑스의 근로자 임금안정을 위한 주택·교육 그리고 보육정책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여기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임금결정에 참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주거비 비용은 전가구 소비지출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1993년 현재 약 17%)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주택보조가 잘 발전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지출한 주택비용 가운데 상당부분(수혜대상자에 따라 약 20~60%)을 환불형식으로 되돌려 받으므로 주택비 지출비중은 사실상 많이 축소되고 있다. 한편 보육 및 교육은 주로 국가의 보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우며, 특히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부담은 가족급여를 통하여 충분히 보조되므로 그동안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1994년 12.6%)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업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날이 갈수록 경제와 사회에 넓고 깊게 침투되었으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실업자수의 증가는 실업수당기금의 적자운영을 초래하였고 이는 고용관련 보험료의 70%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더 증가된 고용관련 각출금 부담은 기업성장의 저해와 일자리 축소로 결과되며, 실업자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었다. 실업자의 증가는 구매력을 약화시켜 소비지출을 축소시켰으며,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었고, 경기 침체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 침체와 함께 의료보험수가의 증가와 국민의 노령화 현상에 기인한 퇴직수당의 증가, 그리고 실업자수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은 계속적인 적자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여러 분석 연구를 통하여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원인으로는 프랑스의 적정선을 초과한 사회보장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수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 프랑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기업의 공적 부담률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에 이어 OECD중에서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이 높은 점은 민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은 노동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확대는 곧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고용주들보다는 적은 부담을 하지만 프랑스 근로소득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임금의 2분의 1정도를 복지분담금으로 각출당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있으며, 또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무거운 노동비용은 그 어느 쪽에게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업의 복지부담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비싼 노동비용은 실업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관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는 점은 복지 무용론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가 경제의 효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나라의 경우 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그 이유는 적정한 사회복지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돋우고, 협동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아예 없거나 미흡한 사회에서는 소외계층이 생기고 계층간갈등 그리고 범죄가 사회의 주요문제가 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는 복지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프랑스의 복지는 어느 적정수준을 초과한 지 오래 된 감이 있다. 이는 요즈음에 와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조정의 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1995년부터 사회보장정책의 근본적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1995년 말 고용증진과 복지제도축소 및 복지기금 조달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전면적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나 복지수준을 후퇴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국민적 저항이 크고,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후유증이 무척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복지는 정치·사회적 선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서 복지는 시장의 기능을 기초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프랑스 일각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들의 교과서적인

주장이다. 즉 경제논리가 정치·사회적 논리에 우선하여야 하며, 경제는 시장기능을 기초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후에 시장에서의 낙오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복지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근로자의 복지 개선은 이러한 곤경에 빠져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적정 근로자복지를 도출해 내야겠다.

부록 I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나라마다 틀리므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지 이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가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임금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가능하면 따르는 추세이며, 그 결과 회원국들 사이에 임금의 비교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에 대한 정의와 그의 구성요소

Earnings	
정 의	<p>The concept of earnings relates to remuneration in cash and in kind paid to employees, as a rule at regular intervals, for time worked or work done together with remuneration for time not worked, such as for annual vacation, other paid leave or holidays.</p> <p>Earnings exclude employer's contributions in respect of their employees paid to social security and pension schemes and also the benefits received by employees under these schemes. Earnings also exclude severance and termination pay.</p>
구성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rect wages and salaries for time worked 2) remuneration for time not worked 3) bonuses and gratuities 4) housing and family allowances

- 1) direct wages and salaries for time worked
 - = straight-time pay of time-rated workers
 - + incentive pay of time-rated workers
 - + earnings of piece-workers

- + premium pay for overtime, shift, night and holiday work
- + commissions paid to sales and other personnel
- + premiums for seniority and special skills
- + geographical zone differentials
- + payments under guaranteed wage systems
- + cost-of-living allowances and other regular allowances

2) remuneration for time not worked

= direct payments to employees in respect of public holidays, annual vacations and other time off with pay granted by the employer

3) bonuses and gratuities

= seasonal and end-of-year bonuses
 + additional payments in respect of vacation period
 + profit-sharing bonuses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비용(Labour cost)에 대한 정의와 그 구성요소-노동비용의 정의와 구성요소

Labour cost	
정 의	The cost incurred by the employer in the employment of labour. The statistical concept of labour cost comprises remuneration for work performed, payments in respect of time paid for but not worked, bonuses and gratuities, the cost of food, drink and other payments in kind, cost of workers' housing borne by employers, employers'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cost to the employer for vocational training, welfare services and miscellaneous items, such as transport of workers, work clothes and recruitment, together with taxes regarded as labour cost.
구성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Direct wages and salaries ② Remuneration for time not worked ③ Bonuses and gratuities ④ Food, drink, fuel and other payments in kind ⑤ Cost of workers' housing borne by employers ⑥ Employers' social security expenditure ⑦ Cost of vocational training ⑧ Cost of welfare services ⑨ Labour cost not elsewhere classified ⑩ Taxes regarded as labour cost.

프랑스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권하는 노동비용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와 일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비용에 대한 정의는 부록1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 정의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노동비용이란 고용에 따른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그럼 노동비용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비용=임금

+사회보장비용과 연금

+직업훈련비

+근로자를 위한 후생비용

+노동비용은 간주될 수 있는 각종 세금

附錄 II

여기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임금에 대한 정의와 그 구성요소들을 비교하여 보자.

●프랑스 임금에 대한 정의¹⁾

These refer to gross earnings before deduction of social contributions(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s etc.) and before any other deductions because of absence or sick leave, short time or lay-off due to bad weather. They include all components of earnings for the reference month including bonuses and overtime pay.

●한국 임금에 대한 정의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They are defined as total gross cash earnings, prior to employee's income tax,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union dues, payments for purchased commodities, etc.)

이와 같이 양국의 임금에 대한 정의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대한 개념은 호환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양국 임금의 구성요소들을 비교해 보자. <부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와 한국의 임금은 크게 볼 때 네 가지로 분류되며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구성요소들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그리고 각종 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 양국의 임금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의 내용에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양국의 임금관련 통계 자료의 비교에서 오는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부표 1> : 한국²⁾과 프랑스의 임금 구성요소 비교

프 랑 스	한 국
<p>〈기본급여의 총합〉 The total of basic wages, which corresponds to the total of the first lines in the employees' pay statement for the hours paid for.</p>	<p>〈기본급〉 Regular payments, i.e. earnings on the basis of methods and conditions previously determined by labour contracts, collective agreements or establishment's wage regulations.</p>
<p>〈초과수당의 총합〉 Total remuneration for overtime</p>	<p>〈초과근무 수당〉 Overtime payments, i.e. allowances paid for overtime work on working days, holiday work, night work, or day watch.</p>
<p>〈보너스의 총합〉 Monthly bonuses paid for the reference month as for the other months : these include all bonuses or gratuities systematically paid each month, even if the amount varies from one month to another</p>	<p>〈가족수당, 주택수당, 현물급여〉 Family allowances, house-rent allowances and payments in and for food, drink and fuel.</p>
<p>〈기타 프리미엄〉 Other premiums, i.e., non-monthly bonuses or exceptional gratuities for the reference month</p>	<p>〈특별 현금급여〉 These may be payments made to employees during the survey period for extraordinary or emergency cases, without prior agreement, contract or rule, and the payments, terms and amounts of which are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 such as retroactive payment of wages as a result of retroactive agreements, payments such as summer and yearend bonuses which are paid for each period longer than three months, profit-sharing bonuses, and allowances paid for unforeseen events, such as marriage allowances.</p>

자료 : Sources and methods : Labour statistics, vol.2 Employments wages and hours of work(Establishment surveys), ILO : Geneva, 1987.

주석 1)Sources and methods : Labour statistics, vol. 2Employments wages and hours of work(Establishment surveys).ILO : Geneva, 1987.

주석 2) 여기서 한국의 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參考文獻

A. Publications or Papers

CENTRE D'ETUDE DES REVENUS ET DES COUTS, *Constat de l'évolution récente des revenus en France (1986-89)*, juin, vol. I, II, III, IV, Paris, 1990.

CHEROUTRE MT., *Essor et l'avenir du bénévolat, facteur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a vie*, France,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volume 1, Paris, 198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 MISSOC, 1992.

FERON F. and THORAVAL A., *Etat de l'Europe*, DECOUVERTE, Paris.

FOURNIER Jacques et QUESTIAUX Nicole, *Traité du social: situations, luttes, politiques, institutions*, 4^e édition, Dalloz, Paris, 1984.

ILO, *Sources et méthodes: statistiques du Travail*, volume 1 *Indices des prix de la consommation*, 3^e édition, Genève, 1992.

_____. *Sources and methods: Labour statistics*, vol. 2, *Employments wages and hours of work (Establishment surveys)*, ILO: Geneva, 1987.

_____. *Recommandations Internationales en vigueur sur les statistiques du travail*, BIT, Genève, 1988.

_____. *Un système intégré de statistiques des salaires: manuel de*

- méthodologie*, Bureau de Statistique, Genève, 1979.
- _____. *Economie et Statistique*, no.281, Paris, 1995-1.
- _____. *Compte satellite de la protection sociale. Rapport sur les comptes de la Nation*, 1993.
- INSEE, *Annuaire rétrospectif de la France, Séries longues : 1948 ~88*,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INSEE), Paris, 1990.
- Dupeyroux J. J.,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Paris, Dalloz, 1988.
- LARROUTUROU P., *a ne peut plus durer : douze propositions pour une société plus humaine*, SEUIL, Paris, 1994.
- MERAUD Jacques, *L'évolution et les perspectives des besoins des Français et leur mode de satisfaction*,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juin, Paris, 1989.
- MINISTE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ARES, *Bulletin mensuel des statistiques du travail*, mars, Paris, 1995.
- MOGHADAM R., "Why is unemployment in France so high?", IMF Working paper, May 1994.
- OECD, *Measuring the effects of inflation on income, saving and wealth: Report prepared for OECE and SOEC*, Paris, 1983.
- PERRET B. and ROUSTANG G., *Economie contre la société : Affronter la crise de l'intégration sociale et culturelle*, SEUIL, Paris, 1993.
- THEVENET A., R.M.I. *Théorie et pratique*, CENTURION, Collection Travail Social : Des Savoirs pour l'Action, Paris, 1989.
- VANLERENBERGHE P. et SAUVAGE P., "Revenu minimum d'insertion: Trois ans de mise en oeuvre", *Economie et Statistique*, mars, Paris, 1992.

박찬용, 「한국의 노사관계 : 1996년 변화예상도」, 『삼성경제』, 제45호, 1996.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전서』, 1991.

伊藤 陽一·岩井浩·福島利夫 編著, 『労働統計の国際比較』, 法政大學 日本統計研究所, あずさ出版社, 1993.

社會保障研究所編, 『フランスの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會 1989.

B. Statistical data

EUROSTAT, Family budgets, Comparative tables 1988-All households Denmark-Greece-France-Ireland-Luxembourg-Netherlands, Theme 3c, 1993.

ILO,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1975-1~1995-2, 1995-2, Geneva.

_____, *Supplement of the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1975-1~1995-1, Geneva.

_____,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1994, 1986, 1980, Geneva.

_____, *Statistics on occupational wages and hours of work and on food prices: October inquiry results*, 1992 and 1993, 1994, Geneva.

INSEE, *Annuaire Statistique de la France*, Vol.98, 1994.

INSEE, *Données sociales*, éd. 1987.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June Paris, 1995.

U.N. and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World comparisons of real gross domestic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1985 : Phase V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New York, 1994.

통계청, 『1994 도시가계연보』, 1995.

통계청, 『1990 인구 주택 총조사』, 1995.